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금의 설치)</p> <p>③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설치)</p> <p>③ <삭제></p>
<p>제3조(기금의 재원) (생략)</p> <p>1. 「도로법」 제7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재원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<u>제91조</u>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자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존속기한) ----- ---<u>2021년 12월 31일까지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